

'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(안)

제출년월일 : '98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의안
번호 41-1

1. 제안사유

- 1998. 11. 5 제154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임야취득)(안)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을 사전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사항 미비로 유보된바 있어 매입대상 임야를 19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수정(안)(7-2)호와 같이 선정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[재산의 취득]

- 도유임야 매입 -

-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(안)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(7-1) 및 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의 수량 450,000m², 금액 400,000천원을 수량1,079,787m²(8필지) 중에서 금액 390,000천원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함.
 - 위 치 :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49-1 외7필 중 390,000천원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함.
- 재산의 표시 및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, 추정가액등은 별지와 같음.
 - 규 모 : 총 면적 933ha, '99년도 매입 50ha (추정)
 - 시 기 : '99상반기
 - 취득가액 : 총 8,400,000천원, '99년도 390,000천원(추정)
- ※ 임야매입 후 필지별 매입현황 보고계획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9공유재산관리계획서(안)에 대한수정(안) : 「별첨」

5. 관계법령 발췌 : 「별첨」

'99공유재산관리계획서(안)

19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| 구 분 | | | 당 초 | | | 변 경 (추가) | | | 합 계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건수 | 수 량 | 금 액 | 건수 | 수 량 | 금 액 | 건수 | 수 량 | 금 액 |
| 취 득 | 계 | 토지 | 1 | 총9,330,000 '99년508436 (추정) | 8,400,000 390,000 (추정) | | | | 1 | 총9,330,000 '99년508436 (추정) | 8,400,000 390,000 (추정) |
| 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| 매입 | 토지 | 1 | 총9,330,000 '99년508436 (추정) | 8,400,000 390,000 (추정) | | | | 1 | 총9,330,000 '99년508436 (추정) | 8,400,000 390,000 (추정) |
| 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| 교환 취득 | 토지 | | | | | | | | | |
| | | 건물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| 기타 취득 | 토지 | | | | | | | | | |
| 건물 기타 | | | | | | | | | | | |
| 처 분 | 계 | 토지 | | | | | | | | | |
| 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| 매각 | 토지 | | | | | | | | | |
| 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| 양여 | 토지 | | | | | | | | | |
| 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| 교환 처분 | 토지 | | | | | | | | | |
| 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
| 사용 및 대부허가 | 토지 | | | | | | | | | | |
| | 건물 | | | | | | | | | | |
| | 기타 | | | | | | | | | | |

19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수정(안)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'm', 천원)

| 일련 번호 | 당 초 안 | | | | | | | 수 정 안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|
| | 새 산 표 시 | | | 추정 가액 | 취득 시기 | 취득 사유 |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 | * 재 산 표 시 | | 추정 가액 | 취득 시기 | 취득사유 |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 |
| | 시복 | 소 재 지 | 수 량 | | | | | 소 재 지 | 수 량 | | | | |
| 계 | 토지 | 1건 | 총 9,330,000 '99년 450,000 | 총 8,400,000 '99년 400,000 | 상반기 | | | 1건(8필) | 총9,330,000 '99년 매입 1,079,787중 508,436매입 (추정) | 총 8,400,000 '99년390,000 (추정) | 상반기 |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 로임야매입 도 유림확대 | 서울성동구 금호동14-10 전재현 외5 (추정) |
| 1 | 토지 (임야) | 충주,제천, 괴산,단양 군농기존 도유림 임야 사유임야 | 총 9,330,000 '99년 450,000 | 총 8,400,000 '99년 400,000 | 상반기 | 대상지 미선정 | | -제천시봉양읍 명암리산49-1 -제천시봉양읍 명암리산16 -제천시봉양읍 명암리산17 -제천시봉양읍 명암리산25 -제천시봉양읍 명도리산97-1 -제천시백운면 운학리산284-1 -제천시백운면 운학리산276-1 -괴산문광광덕 산37-1 | 총9,330,000 '99년(추정) 1,079,787중 508,436매입 313,289 7,537 21,025 35,306 131,279 203,951 56,700 310,700 | 총8,400,000 '99년390,000 (추정) | 상반기 |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 로 임야 매입 도유림 확대 | 서울 성동구 금호 동14-10 전재현 제천봉양명암 87 성병하 " 제천시모산동 359-2 이상원 서울도봉미아 791-3140최익선 제천봉양장평 781-1김영기 " 괴산문광광덕 189김종원의3 |

주) (1)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
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]

| 지 방 재 정 법 |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|
|---|---|
| <p>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.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.처분으로 한다.</p> |
| 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공유재산의 취득.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|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.군.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.군.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</p> |

[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]

| 지 방 재 정 법 |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|
|-----------|---|
| | <p>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.군.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 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(시.군.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</p> |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]

|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|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|
|---|---|
| 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제13호 서식) 2~5호 생략 |